

의안번호	2126419
의 퇴 인	윤창현의원
회 답 일	2024.01.23.
추 계 번호	24D0073

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(일부추계) 개정안에 따라 자율방범대의 날 기념행사를 실시하고, 자율방범대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374억 4,100만원 등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1,921억 4,500만원(연평균 384억 2,900만원) 이상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5~2029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 \ 연도	연도	2025	2026	2027	2028	2029	합계	연평균
기념행사비용 및 수당 등 지급 (안 제3조의2 등)	국비	18,785	19,031	19,278	19,530	19,785	96,409	19,281
	지방비	18,656	18,898	19,144	19,393	19,645	95,736	19,147
	합 계	37,441	37,929	38,422	38,923	39,430	192,145	-

- 주: 1. 본 비용추계서의 자율방범대원의 수당은 의용소방대원 수당을 참고하여 추계한 결과로, 실제 수당 단가 및 인원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
 2. 본 비용추계서의 기념행사 비용은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결과로, 향후 실제 기념행사의 규모에 따라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
 3. 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
 4. 본 추계결과는 재량지출성 재정수반요인을 일부 포함한 것으로, 관련 예산이 편성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산출한 결과이며,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3조의2(자율방범대의 날 제정과 운영) 신설	자율방범대원들의 자긍심과 긍지를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2일을 자율방범대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하고, 자율방범대의 날부터 1주간을 자율방범주간으로 함	의무규정
2	안 제14조(경비 등의 지원) ¹⁾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율방범대원이 자율방범활동을 수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각각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(제3항)	재량규정
	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율방범대원이 자율방범활동의 수행 또는 교육·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각각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함(제4항)	의무규정

1) 안 제14조제1항의 사무실·초소 설치비 또는 임차료 등(재량규정)의 경우, 현행 「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, 제3조,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경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방범대, 연합대, 연합회, 중앙회에 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(임차비용 포함)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미대상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3조의2(자율방범대의 날 제정과 운영)	○	-
2	안 제14조(경비 등의 지원)	일부추계	-
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율방범대원이 자율방범활동을 수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각각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(제3항)	○	-
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율방범대원이 자율방범활동의 수행 또는 교육·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각각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함(제4항)	×	자율방범대원의 재해발생 확률, 보상금 대상자 수, 평균 보상금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 불가능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안 제3조의2에 따른 자율방범대의 날 제정 및 운영과 관련하여, 본 추계에서는 유사사례로 의용소방대의 날(3월 19일) 기념행사 비용을 참고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함
- 안 제14조제3항에 따른 자율방범대원 수당 지급의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, 본 추계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50%씩 부담하는 것으로 가정하되, 자율방범대원의 수당은 의용소방대 수당을 참고하여 추계함
-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, 국회 심사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자율방범대의 날 제정과 운영(안 제3조의2 신설)

- 유사사례인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로 2024년 기준 1억 2,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므로, 동 예산을 개정안에 따른 자율방범대의 날 기념행사 비용으로 가정하여 산출하면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1억 2,900만원 등 2025년부터 2029년까지 6억 7,200만원으로 추정됨
 - 소방청 예산설명자료(2024년)에 따르면,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로 1억 2,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음
 - 추계기간 동안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(2023.11.)한 소비자물가상승률²⁾을 적용함
 - 본 추계에서는 자율방범대의 날 기념행사 비용을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함

[표 2] 기념행사 비용 추정: 2025~2029년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5	2026	2027	2028	2029	합 계
기념행사 비용	129	132	134	137	140	672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나. 자율방범대원 수당 지급(안 제14조제3항 신설)

-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, 2023년 10월 기준 자율방범대원의 수는 8만 5,175명이며, 추계기간 동안 동일한 것으로 가정함³⁾
 - 참고로, 자율방범대 전국 조직현황을 살펴보면, 중앙회 1개, 연합회(시·도 단위) 16개, 연합대(시·군·구 단위) 243개, 자율방범대(읍·면·동 단위) 4,049개 등 총 4,309개의 단체가 활동 중임(2023년 10월 기준)
- 자율방범대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의용소방대 수당(1명당 연간 42만 6,889원)과 동일하게 지급하되, 동 금액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(202

2) 2025년 2.2%, 2026년 2.2%, 2027년 2.1%, 2028년 2.1%, 2029년 2.1%임

3) 2019년 이후부터 2021년까지 자율방범대원의 수가 증가하다가, 2022년부터는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추계기간 동안 자율방범대원의 수는 동일한 것으로 가정함

3.10.)한 공무원 보수 상승률 1.3%⁴⁾를 적용하여 산출함

-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, 2022년 결산 기준 의용소방대 소집 수당 지급액은 총 406억 4,322만 3,000원이고, 의용소방대원 수는 95,208명으로 대원 1인당 소집 수당은 연간 42만 6,889원임

-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방범대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373억 1,200만원 등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총 1,914억 7,300만원으로 추정됨

[표 3] 자율방범대원 수당 지급에 따른 소요비용 추정: 2025~2029년

구 분	2025	2026	2027	2028	2029	합 계
자율방범대원 수(A, 명)	85,175	85,175	85,175	85,175	85,175	—
1인당 수당(B, 원)	438,060	443,755	449,524	455,368	461,287	—
추가재정소요(=A×B, 백만원)	37,312	37,797	38,288	38,786	39,290	191,473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다. 추계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자율방범대의 날 기념행사를 실시하고, 자율방범대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374억 4,100만원 등 추계기간 동안 총 1,921억 4,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

[표 4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5~2029년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	2025	2026	2027	2028	2029	합 계
기념행사 비용		129	132	134	137	140	672
수당	국비(50%)	18,656	18,899	19,144	19,393	19,645	95,737
	지방비(50%)	18,656	18,898	19,144	19,393	19,645	95,736
	소계	37,312	37,797	38,288	38,786	39,290	191,473
합 계	국비	18,785	19,031	19,278	19,530	19,785	96,409
	지방비	18,656	18,898	19,144	19,393	19,645	95,736
	소계	37,441	37,929	38,422	38,923	39,430	192,145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4) 2024년 이후부터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은 1.3%임

IV. 부대의견

- 본 비용추계서의 자율방범대원의 수당은 의용소방대원 수당을 참고하여 추계한 결과로, 향후 실제 수당 단가 및 인원 에 따라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
- 본 비용추계서의 기념행사 비용은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결과로, 향후 실제 기념행사의 규모에 따라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
- 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
- 본 추계결과는 재량지출성 재정수반요인을 일부 포함한 것으로, 관련 예산이 편성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산출한 결과이며,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최형수	오명희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최형수	02-6788-4667	jjaps@na.go.kr